

사업 연도			증 자 소 득 공 제 신 청 서				처리기간 수 시		
신 청 인	①법 인 명		②사업자등록번호						
	②대표자성명		④없		중				
	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		(전화번호:)						
1.소득공제액계산									
⑥증자 연월일	⑦증가 된자본 금	⑧비업무 용부동산 취득가액	⑨차감 (⑦- ⑧)	적용율			⑬소득공 액(⑨×⑩ ×⑪×⑫)	⑭최저한 세적용감 면배제금 액	⑮차감공 제금액 (⑫-⑬)
				⑩ 월수	⑪ 공제율	⑫제조 업비율			
				12	100	100			
				12	100	100			
				12	100	100			
				12	100	100			
합계									
2.가지급금등 한도액 계산									
<16>월별	<17>가 지급금 등	<18>주식 취득자금	<19>계 (<17>+<18>)	<20>증가된 자본금의 10%해당액		<21>초과액 (<19>-<20>)	비고		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고자 신 청합니다.									
세무서장 귀하			년 월 일 신청인			(서명 또는 인)			

증자소득공제신청서 작성요령

1. ⑦란은 증자일자별로 증자액을 기입합니다.
2. ⑩란은 「증자후 월수/12」를 기입합니다.
3. ⑪란은 중소기업의 경우 10/100, 중소기업외의 법인은 8/100, 우리사주조합원 출자분(추가공제분)은 5/100를 기입합니다.
4. ⑫란은 시행령 제89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 대비 제조업수입금액 비율을 기입합니다.
5. ⑧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란에는 증자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당해사업연도 말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합니다.
6. ⑨차감란은 ⑦증자된 자본금에서 ⑧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하며, "0"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.
7. ⑭란의 합계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(2)호 서식 소득공제조정명세서 상의 (05)증자소득공제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기입합니다.
8. 가지급금등 한도액계산은 "<17>가지급금등" "<18>주식취득자금"란에는 증자후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등과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매월말 잔액을 기입하고 ⑦증가된 자본금의 10% 해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.